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67 취득세 부과처분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984,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가. 원고는 2021. 3. 22.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4. 19. ○○시 B 답 1,464㎡, C 전 638㎡, D 답 331㎡를 70,000,000원에, E 전 1,2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리와 지번만 표시한다)를 22,14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각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2,073,150원, 농어촌특별세 414,630원 합계 2,487,780원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과세감면 토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물건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28.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2022. 9. 8.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0. 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2,700,820원, 농어촌특별세 141,600원, 지방교육세 141,600원 합계 2,984,020원[1]을 각 부과·고지(이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6. 12. 원고의 감사원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지정리, 전기공사, 토지합병 신청, 컨테이너 설치, 조경수 식재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출입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토목작업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1) B, C, D와 관련하여 감면된 취득세는 1,575,000원, 농어촌특별세는 105,000원, 지방교육세는 105,000원이고, E와 관련하여 감면된 취득세는 498,150원, 농어촌특별세는 33,210원, 지방교육세는 33,210원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6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5,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22. 5. 3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잡초가 자라 있었고, 당시 위 공무원은 F리 이장으로부터 2021년에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인 2022. 4. 19.까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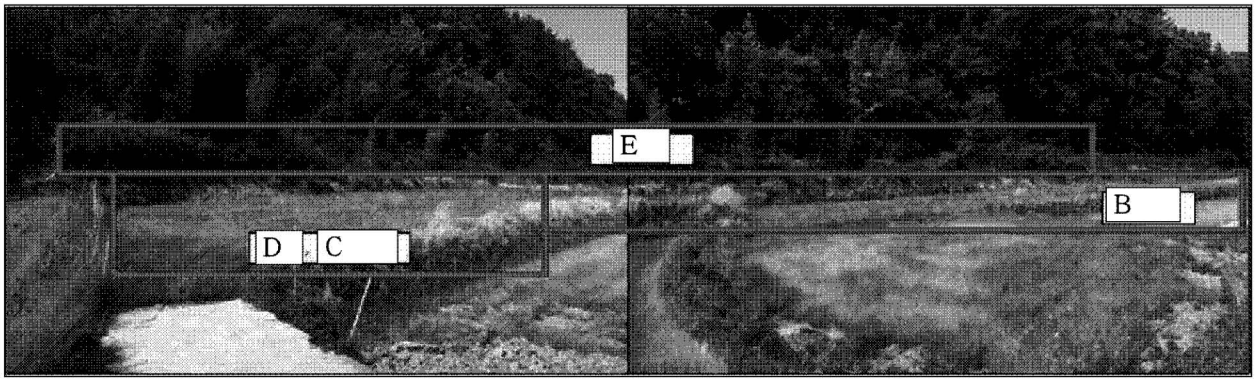

2) 원고는 경지정리, 전기공사를 하였다면서 현장사진(갑 제5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경지정리,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과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촬영한 2022. 10. 31.자 현장사진을 비교해 보면, 원고가 경지정리를 하였다는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G 토지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합병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14.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경지정리 및 전기공사를 하였고, 토지합병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영농사업계획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유리하우스 등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설치 운영하고, 열대과일, 채소 등을 생산하여 신선채소 도시락 등을 공급하며, 상황버섯을 생산하여 건강식품으로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22. 10. 31.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영농사업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2022. 10. 31.자 현장사진(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잡석, 잡풀 등이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2)항 기재 사정들 및 주변 토지 매입 및 진입로 개설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토지 매입이나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백○○

판사 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별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 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